

『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승마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단체입장 기준 조정(안 제2조)
 - 당초 : 20명 → 변경 : 10명
- 단체 통합에 따른 승마단체 정의 변경(안 제2조)
 - 당초 : 대한승마협회 및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 가입된 단체
 - 변경 :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8조)
 - 당초 : 전염병 → 변경 : 감염병

-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삭제(안 제19조)
- 승마장 휴장일을 명확히 규정(안 제20조)
 - 근로자의 날 추가 및 연휴에 관한 사항
-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
(안 제24조 ~ 제27조의2)
 -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
-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현실화, 누락항목 추가
(안 별표 1, 별표 2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
추가 등 관련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,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
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단체 입장 기준 조정,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하여 승마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